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11-03215
----------	----------

남궁역 의원 (국민의힘, 동대문3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가로수 조성 · 관리 과정에서 환경 여건에 따라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, 도로관리청과 조성 · 관리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청이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신설(안 제10조제2항)하고, 「도로법」 및 도로 시설과 관련하여 조성 · 관리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)한 것입니다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